

총학생회장 선거관리규정

제 정 : 1996. 8.16.
개정(1) : 1998. 9. 2.
개정(2) : 2002. 9. 1.
개정(3) : 2003. 9. 1.
개정(4) : 2007. 5. 7.
개정(5) : 2017. 3. 1.
개정(6) : 2021. 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총학생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선거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

1. 선거의 관리 및 절차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4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중 호선을 통하여 선임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선거 시행 학기에 등록 재학 중인 원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5.17>

제4조(피선거권의 자격) 회장직에 입후보 할 수 있는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자
2. 입후보 시점기준으로 EMBA 과정에 재학중이며, 잔여 학기가 2학기 이상인자 <개정 2021. 5.17>
3. 소정의 추천서에 20명 이상의 대의원 서명에 의한 추천서를 받은자

제5조(선거공고 및 기간) <개정 2021. 5.17>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개시일 1주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선거 홍보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3. 투표일은 3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후보등록) 회장 입후보 희망자는 제4조 제3호의 추천서를 첨부한 소정의 입후보원서를 작성하여 선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한다. <개정 2021. 5.17>

제7조(의결정족수) 회장 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유효하다.

제8조(단일후보의 선거)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9조(복수 후보의 선거)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다득표자가 같은 경우 다득표자 끼리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우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은 1996. 8.16.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 9. 2.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 9.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 9.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 5. 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 5.17.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정)

부칙(1)

부칙(2)

부칙(3)

부칙(4)

부칙(5)

부칙(6)